

---

# GENERAL ORDER



DISTRICT OF COLUMBIA

Title: 경찰에 대한 시민의 영상촬영, 사진촬영  
및 음성녹음(Video Recording,  
Photographing, and Audio Recording  
of MPD Members by the Public)

No: GO-PER-304.19

---

## I. 정책(Policy)

MPD는 직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공공장소에서 업무 집행을 수행하는 동안 시민이 경찰 치안활동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 수정 헌법 제 1조의 권리에 따라 시민이 MPD 직원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또는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II. 규정(Regulations)

A. 직원은 비디오 녹화를 포함해 워싱턴 D.C에 있는 특정 장소, 건물, 구조물 및 사건 등에 대해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법적 활동임을 인식하고 있다.

1. 시민이 어떤 장소를 사진 촬영하거나 비디오 녹화를 하고 있는 경우, 직원은 그런 활동 자체가 의심스러운 행위가 아님을 인식한다.
2. 직원은 의심스러운 행위의 확인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기 위해 GO-HRC-802.06 (수상한 활동 보고 프로그램,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Program)을 참조해야 한다.

B. 공공장소에서, 직원은 행인(bystander)에게 뉴스매체(GO-SPT-204.01(Media) 참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사진 촬영을 허용

해야 한다. 직원은 다음을 인지해야 한다:

1. 행인(bystander)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 있을 법적 권리가 있는 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음 할 권리가 있다.
2. 행인은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업무 수행중인 직원을 관찰(observe)하고 녹음할 권리가 있다.
3. 공공장소는 공원, 인도, 거리 및 대중의 시위가 일어나는 장소를 포함하지만 또한 개인의 집이나 사업장, 공공/사적 시설 및 건물, 그리고 개인이 자신이 위치한 곳에 있을 법적 권리가 있는 기타 공공 또는 사적 시설까지 확장된다.
4. 그러나, 행인이 카메라나 기타 녹음 장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 저지선(police line)을 넘거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구역에 들어가거나 또는 범죠헌장으로 지정된 장소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C. 개인이 자신이 위치한 곳에 있을 법적 권리가 있는 장소에서 또한 직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서 사진 촬영이나 녹음을 하는 한, 직원은 시민에게 경찰관 및 경찰의 치안 활동 또는 치안 활동(Terry stop<sup>1)</sup> 또는 체포와 같은)의 조사 대상자(subject)를 촬영하거나 녹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거나 지시 해서는 안 된다, 즉 허가가 필요하고; 또는 경찰관의 동의를 필요하다거나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직원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1. 해당자에게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해서는 안 된다;
2. 해당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해당자에게 사진촬영 및 녹음한 이유를 진술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4. 해당자를 억류하지 않는다;

---

1) 체포할 합리적인 근거는 부족하지만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합리적 의심이 되는 사람을 경찰이 잠시 동안 구금하는 경우

5. 카메라나 녹음 장치를 의도적으로 막거나 방해 하지 않는다;
6. 직원의 법집행 활동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위협하거나 겁주거나 또는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참조: 직원은 시민과의 접촉 중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거나 혹은 저지를 것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한, 시민에게 '멈추시오'(stop)라고 명령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직원에게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GO-OPS-304.10 Police-Citizen Contacts, Stops, and Frisks 참조)

D. 직원은 시민이 치안 활동을 방해할 권리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방해란 직원이 업무를 못하도록 막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막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 위협, 동작 또는 활동을 말한다.

1. 시민이 직원의 안전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위치에서 경찰의 치안활동을 사진촬영하거나 녹음하고 있는 경우,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촬영이나 녹음을 중지하라고 명령해서는 안 된다.
2. 시민이 다른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위치에서 경찰의 치안활동을 사진촬영하거나 녹음 하고 있는 경우, 방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진촬영이나 녹음을 중지하라고 명령해서는 안 된다.
3. 안전한 거리에서 경찰의 치안 활동을 녹음하고, 경찰의 치안 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차적인 행동이 없으면 이는 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시민은 경찰의 치안 활동에 대해 비판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비판을 표명하는 것이 경찰, 용의자 또는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E. 카메라 또는 녹음장치에 있는 증거; 상당한 근거(Evidence on a Camera or Recording Device; Probable Cause)

1. 상당한 근거는 알려진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직원이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거라고 믿을만한 상황에서 존재한다. 예., United States V. Scott, 987 A.2d 1180, 1191 (D.C. 2010).
2. 카메라나 기타 녹음 장치에 범죄 행위의 증거가 되는 소리나 이미지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직원은 해당자가 다음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a. 자발적으로 장치나 녹음 매체(recording medium)(예, 메모리 칩)를 직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 b. 실행가능한 곳에서, 또한 직원의 면전에서 이미지나 소리를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자발적으로 직원의 '공식 정부 전자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요구한다.
  - c. 장치나 녹음 매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도록 요구해야 되지만 이를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해당자가 장치나 녹음 매체를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해당자의 재산 또는 전자 장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
  - b. 확보한 증거에 대해 CCN<sup>2)</sup> 번호를 매기고, CCN 번호를 해당자에게 제공한다;
  - c. MPD 절차에 따라 PD-81의 "재산 목록/회수된 증거"부분에 해당자가

---

2) Category Control Number, 즉 '목록의 일련 번호'

제출한 품목을 기록 한다;

d. 해당 현장 보고서 및 기타 문서의 서술(narrative)란에 직원의 요청 및 개인의 응답을 기록 한다; 그리고

e. 가능한 신속하게 관련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장치 및 녹음 매체를 '전자기기 감시부'(Electronic Surveillance Unit)에 제출한다. 직원은 장치 및 녹음 매체에 들어있는 자료를 보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접속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4. 해당자가 장치 및 녹음 매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소리 및 이미지를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녹음 장치를 압류하지 않을 시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없어질 거라고 믿는 위급한 상황인 경우, 직원은 범죄 조사국(CID,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의 부지휘관(Watch Commander)에게 연락해야 한다.

a. 범죄 조사국(CID)의 부지휘관(Watch Commander)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지휘관은 녹음장치에 대해 소속 직원이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현장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영장 없는 수색 카메라/녹음 장치의 압류, 또는 체포도 포함된다.

b. 직원은 현장 지휘관(Watch Commander)에게 장치에 담겨 있다고 믿어지는 범죄 행위의 증거에 대한 성격을 알려야 한다.

c. 범죄 조사국(CID)의 부지휘관(Watch Commander)은 문제 되고 있는 사건의 범죄 가능성을 심각성 및 긴박한 상황을 토대로 하여 해당 녹음장치의 압류를 영장 없이 승인할지 지휘관(Commander)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영장 없는 압류는 다음과 같을 때만 허용이 가능 하다:

(1) 물건이 밀수품이거나 범죄의 증거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2) 영장 없는 압류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인정되는 예외가 존재할 때.

d. 범죄 조사국(CID)의 부지휘관(Watch Commander)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영장 없이 장치에 대한 압류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원에게 압류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한다.

e. 직원은 CCN 번호를 매기고 압류당한 당사자에게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f. 위와 같은 압류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임시 구속 조치(restraint)여야 한다. Illinois v. McArthur, 531 U.S. 326, 334 (2001).

F. 카메라 또는 녹음장치에 있는 증거를 보거나 듣기(Viewing/Listening to Evidence on a Camera or Recording Device)

1.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직원은 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후에야 증거물인 압류 카메라나 메모리칩에 있는 사진을 보거나 녹음을 들어야 한다.

2. 긴급한 상황인 경우, 압류 물건을 즉각적으로 수색하는 것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막는데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은 범죄 조사국(CID)의 부지휘관(Watch Commander)에게 연락해 영장 없이 사진이나 녹음된 것을 검토할 권한을 허가 받아야 한다.

3. 범죄 조사국(CID)의 부지휘관(Watch Commander)은 지휘관(Commander)과 협의해 영장 없이 압류 물건 검토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4. 증거로 압류된 사진이나 녹음 또는 긴급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녹음은 직원이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된다.

G.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소유물인 카메라나 기타 녹음장치에 있는 이미지나 소리 또는 자발적으로 넘긴 카메라나 녹음장치 또는 이 훈령의 조건에 따라 압류

한 카메라나 기타 녹음 장치에 있는 이미지나 소리를 지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되며  
또는 타인이 지우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도 안 된다.

H. 직원은 경찰서에 압류되어 있는 카메라나 기타 녹음 장치의 모든 이미지나  
녹음이 손상되지 않은 채 주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 III. 상호 참조(Cross Reference)

A. GO-SPT-204.01 (Media)

B. GO-OPS-304.10 (Police-Citizen Contacts, Stops, and Frisks)

C. GO-HRC-802.06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Program)